

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1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4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인용한 상위법 조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추가(안 제3조제3호)
- 나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(안 제3조제5호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등(※ 붙임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1. 30. ~ 2. 20.(21일간)

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8항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(중전의 제10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세입)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특별회계(이하 “산업단지특별회계” 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8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</p> <p>5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기타</u>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</p>	<p>제3조(세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</u>」 제38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「<u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33조제10항---</p> <p>6. ~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 <p>11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제38조(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처분)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2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산단진흥과장 조 경 동